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93호, 2018. 4.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하여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되었으나, 훼손지 복구의 대상인 훼손지를 시설물이 밀집 또는 산재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절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훼손지 복구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기존 시설물의 밀집 또는 산재로 훼손된 지역 이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는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7. 18.] [대통령령 제28803호, 2018. 4.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농산물의 비축사업 등을 위탁하

는 경우 대상 농산물의 안전성 확인 방법을 정하여 위탁하도록 하여 비축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60호, 2018. 4.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은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달리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정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운영

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분원 또는 부설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80호, 2018. 4.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영세·소상공인 등이 일정기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지게 된 매장의 실내·외 장식 등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에 대한 보호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

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 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조사·시정 권고를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함(제2조제1호차목 신설 등).

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에 대해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7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표법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81호, 2018. 4.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문구 중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유통·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함으로써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 2018. 7. 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6호, 2018. 7. 1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법인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5581호, 2018. 4.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상표권자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상표권자에게 발급하는 상표등록증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가 상표권 등의 이전등록 후 별도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73호, 2018. 4.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중대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장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

한편, 이 법을 위반하고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가 아닌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등록 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사업자 명의 변경 및 신규 석유사업 등록을 통해 재영업을 하는 등 행정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석유사업의 등록 제한 사유를 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법 위반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74호, 2018. 4.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그 기능 및 성격이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제도를 도입한 주된 취지가 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 등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란 현행 명칭은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82호, 2018. 4.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

록 하며, 전담기관에 대한 서류 반출 허용 및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등록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64호, 2018. 4.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과학기술원의 정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